

1. 제정이유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3호, 2021. 6. 15. 공포)됨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5조·제6조 신설)

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9. 14. ~ 10. 25.) 예정

2) 행정규제 : 협의 예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녹색산업 분류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고 한다) 작성 지침의 구성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6호에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계획 작성 지침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고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 요청)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위치·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법령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6.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7.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직도 및 소속 전문 인력 경력 증명서

4. 관련 특허등록증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를 위한 운영계획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사항외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운영을 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2. 3.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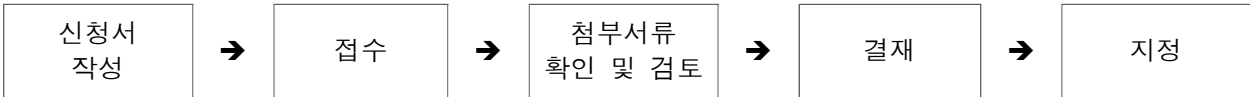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제 호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1. 기업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

접수일	지정번호	발급일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기업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2.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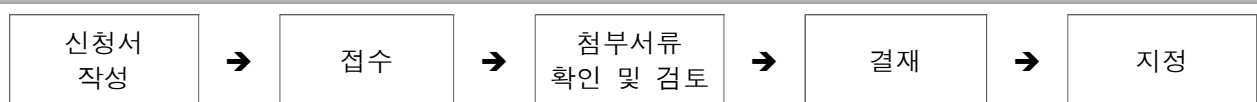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접수일	지정번호	발급일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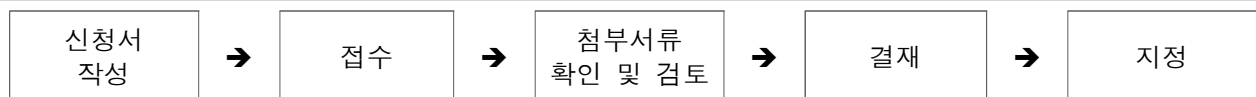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접수일	지정번호	발급일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